

수 신 : 정회원사

참 조 :

제 목 :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
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남근, 더민주, 국토교통위원회, 의안번호 2220997, ' 26. 9. 1)이 발의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,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붙임의 양식에 따라 2026. 9.14(월)까지 사무처 (FAX 032-428-7334, 이메일 qrt9373@kosca.or.kr)로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다 음

□ 주요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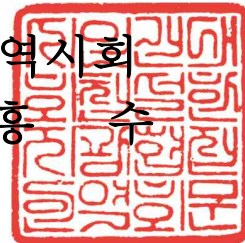
- 하도급대금의 발주자 직접 지급 요건 개선*(안 제35조제2항제3호)
 - * 하도급대금 2회 이상 미지급시 → 1회 미지급 후 수급인에게 서면 독촉(7일 이행기간)에도 불구하고 미지급 시

- 하도급대금 지급채무의 소멸 시기* 하도급법과 통일(안 제35조제3항)
 - *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직접 지급한 경우 →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

- 붙 임 1. 건설산업기본법 개정(안) 1부.
2. 의견 제출양식 1부. 끝.

※ 붙임 문서는 우리협회 홈페이지(incheon.kosca.or.kr) - 공지사항 참조바랍니다.

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
회 장 조 홍 주



담당자 팀원 최현탁 선임 임윤환 파트장 유태원 파트장 노명숙 팀장 조태원
시행 전건협 인천 제725호(2026. 9. 7)

우 21574/인천 남동구 인하로 507번길 38 4층(구월동, 전문건설회관)/ <http://incheon.kosca.or.kr>
전화 032-428-7331 / 전송 032-428-7334 / 전자우편 qrt9373@kosca.or.kr